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1. 고시명 :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-17호)

가. 개정이유

○「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」신상품 출시,「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」,「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」상품개선에 따른 우체국예금 약관 개정

나. 주요내용

○「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」신상품 출시에 따른 약관 신설

구 분	내 용
예금종류	거치식 예금
가입대상	실명의 개인(1인 1계좌)
가입기간	1년~3년(연단위)
가입금액	100만원 이상 제한 없음(원단위)
판매채널	우체국 창구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
적용이율	기본이율(정기예금)+우대이율(최고 연 0.5%p)

○「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」가입대상 확대

종류	현행	개정
가입대상	▪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자 ▪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소지자 ▪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	▪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자 ▪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소지자 ▪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 ▪ **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'훈련수강확인증' 소지자**

○「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」가입대상 변경 등 상품개선

종류	현행	개정
새출발 희망 (확인서류)	▪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(세목 : 근로장려금)	▪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(세목 : 근로장려금)
새출발 행복 (가입대상)	▪ 신용등급7등급이하개인	▪ 개인신용평점 상위 92% 초과 개인*
새출발 희망/행복 (특별중도해지)	▪ 사유발생기준일(전후 1개월) : 주택매매 계약 체결일	▪ 사유발생기준일(전후 1개월) : 계약일로부터 대금 완납일까지의 기간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이전일

다. 시행일 : 2021.05.28.(금)

2. 발령요청자 : 예금사업과장